

【별표 1】

차량의 차종·차형·배정대상 및 내용연수

차 종	차 형	배정대상	내용연수 및 최단주행기간
승용 (업무용)	경형(일반형) :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[별표1]에 따른 경형(일반형)차를 말한다.	○소관부서	□내용연수 승용(전기)차량: 8년 「물품관리법」 제 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에 정하는 내용연수 (조달청고시 제2024-30호) 내용연수 개정 전문 ※ 차량의 내용연수는 주행거리 2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1년, 주행거리 3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2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.
	소형 :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[별표1]에 따른 소형차를 말한다.	○소관부서	
	중형 :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[별표1]에 따른 중형차를 말한다.	○소관부서	
	대형 :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[별표1]에 따른 대형차를 말한다.	○소관부서	
	승용검화물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[별표1]에 따른 승용검화물형차를 말한다.	○소관부서	
승합용	중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[별표1]에 따른 중형차를 말한다.	○소관부서	□최단주행거리 12만km이상 「공무용 차량관리규정」 제 4조의 2항 관련
	소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[별표1]에 따른 소형차를 말한다.	○소관부서	
	경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[별표1]에 따른 경형차를 말한다.	○소관부서	
화물용차 량	경형(일반형)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[별표1]에 따른 경형(일반형)차를 말한다.	○소관부서	
	소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[별표1]에 따른 소형차를 말한다.	○소관부서	
	중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[별표1]에 따른 중형차를 말한다.	○소관부서	
	대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[별표1]에 따른 대형차 를 말한다.	○소관부서	